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73
----------	-------

발의연월일 : 2025. 6. 30.

발 의 자 : 김용만 · 김문수 · 김남희
전진숙 · 김한규 · 서영교
임미애 · 김남근 · 이춘석
박민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통계가 미흡한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정폭력 등으로 사망한 여성은 2023년 138명에서 2024년 180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주요국에서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가정폭력 살인에 대한 예방책으로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가 입법화되어 피해자 보호 실패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조의8 신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8(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하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및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정책, 제도 및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사망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정폭

력사망사건등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8(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하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u>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 사망사건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법인·단체의 장 및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u>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 사망사건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정책, 제도 및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에 대</u>

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사망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